

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-412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8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개정이유

- 미술품의 기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증 미술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정의에 ‘미술품’ , ‘미술품 기증’ 용어설명을 추가함(안 제2조)
-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사항을 개정하고 위원의 임기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(안 제8조, 제10조)
- 위원회 기능에 미술품 등 기증에 관한사항을 추가함(안 제9조)
- 미술품 기증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(안 제17조)

개정조례안 : 붙임1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

-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붙임4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20. 7. 10. ~ 2020. 7. 30. 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붙임5

- 방침결정문 : 붙임6

< 붙임 1 >

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“미술품” 이란 한국화(병풍, 족자 포함), 서양화, 판화, 서예, 조각, 도자기, 사진, 공예품 등 공간 및 시각의 미를 표현한 작품을 말한다.
5. “미술품 기증” 이란 미술관에 자연인 혹은 법인 소유의 미술품을 기증함을 말한다.

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촉하고, 위원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제9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미술품 등 기증에 관한 사항

제10조를 삭제한다.

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,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(미술품 등 기증) ① 시장은 미술관 전시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미술품 및 미술품 관련자료(이하 “미술품 등”이라 한다)를 기증받을 수 있다. 다만, 기증은 전제되는 조건이 없어야 한다.

② 시장은 기증 미술품 등의 전시·표구·도록제작·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미술품 기증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. 다만, 예우는 기증자 본인만 해당하며, 사망시 그 효력이 상실된다.

1. 감사장(패) 및 부상

2. 기증작품 전시회(사망시 추모전 포함) 및 도록 제작

3. 기증 미술품에 대한 기증관 운영(사이버 공간 포함)

4. 시가 관리·운영하는 문화예술 시설의 전시 및 공연 무료입장

5. 그 밖에 시장이 기증자의 뜻을 기리고 기증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

④ 그 밖에 미술품 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은 「안산시 물품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문화예술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문화예술과장 김정아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예술팀장 두현은
	담당자 성명·전화	박주선 (행정 2795)

< 불임 2 >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3. (생 략) <u>〈신 설〉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“미술품” 이란 한국화(병풍, 족자 포함), 서양화, 판화, 서예, 조각, 도자기, 사진, 공예품 등 공간 및 시각의 미를 표현한 작품을 말한다.
제8조(위원회 구성) ① · ② (생 략) <u>③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부로 한다.</u>	제8조(위원회 구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촉하고, 위원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.</u>
제9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. 1. ~ 4. (생 략) <u>〈신 설〉</u> 5. (생 략)	제9조(기능)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미술품 등 기증에 관한 사항 6. (현행 제5호와 같음) <u>〈삭 제〉</u>
제10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<u>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</u> <u>〈신 설〉</u>	제17조(미술품 등 기증) ① 시장은 미술

관 전시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미술품 및 미술품 관련자료(이하 “미술품 등”이라 한다)를 기증받을 수 있다. 다만, 기증은 전제되는 조건이 없어야 한다.

② 시장은 기증 미술품 등의 전시·표구·도록제작·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미술품 기증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. 다만, 예우는 기증자 본인만 해당하며, 사망시 그 효력이 상실된다.

1. 감사장(패) 및 부상

2. 기증작품 전시회(사망시 추모전 포함) 및 도록 제작

3. 기증 미술품에 대한 기증관 운영(사이버 공간 포함)

4. 시가 관리·운영하는 문화예술 시설의 전시 및 공연 무료입장

5. 그 밖에 시장이 기증자의 뜻을 기리고 기증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

④ 그 밖에 미술품 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은 「안산시 물품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제17조 (생략)

제18조 (현행 제17조와 같음)